

제297회 임시회
2011. 1. 27.(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 27(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1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1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월 21일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이 동 성)

가. 제안이유

- 소방방재청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 개정 사항 반영

- 규칙에서 규정하던 조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
- 그 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소방방재청의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 안 반영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근거 및 명칭 규정(안 제2조, 제3조)
 - 지역여건에 따른 임명권자의 정원조정 규정 신설(안 제6조)
 -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지도관제도 신설(제16조의2)
 - 의용소방대의 근무 명령, 출동범위와 전담의용소방대 현장 활동 범위 및 시설, 장비기준 규정(안 제16조)
 - 의용소방대원의 포상, 선진지견학 등 사기진작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 명확화(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
 - 규칙에서 규정하던 조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전담의용소방대 규정에 따라 약칭을 정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나 시 찬)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에 내려준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구광역시(2010. 12. 20), 충청남도(2010.12.30) 개정완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소대 중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의 의소대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의소대를 전담의용소방대(이하“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전담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를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를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와 전담의소대”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소대(여성대 포함)”를 “의소대(여성대, 전담의소대 포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대의 정원 등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장(의소부대장, 여성부대장, 전문의소부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대장(의소부대장, 여성

부대장, 전문의소부대장, 전담의소부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① 대장(의소대장, 여성대장, 전문의소대장, 전담의소대장, 지역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대장의 임기 중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선출시 부대장이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8조 중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를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 지역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지역대원을 포함한다)”을 “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전담의소대원, 지역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대원(의소대원, 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지역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원(의소대원, 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전담의소대원, 지역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소재불명이 된 경우”를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 된 경우”로, 같은 조 제2호 중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를 “대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여 상주하지 않는 경우”로, 같은 조 제5호 중 “3회 이상”을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으로, “불참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기시간이 연8시간 미만인 경우”를 “불참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16시간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를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하며, 전담의소대원은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화재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특별경계근무, 출동대기근무, 교육훈련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중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이하“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라 한다) 등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 운영하여야 하며, 복무와 근무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고 옥내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⑤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의1과 같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운영지도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을 소속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 장이 의소대원으로 임용(이하 “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 복무,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의소 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 중 “소방서장”을 “관할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제3항”을 “받아야 하며, 소방서장이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과목, 내용, 시간은 별표 2의

2와 같다. 단,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용소방대에게”를 “관할 소방서장은 제5조제2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는”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를 “출동 대기근무 수당은 1회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 1회분을 지급하고, 출동(동원)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교육훈련은 1회 4시간 이상 교육훈련에 출석한 대원에게는 출동수당 1회분을 지급하고, 교육훈련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를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의소대 관련 회의, 기술경연대회, 소방체육 행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0조의2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와 포상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활동성적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의소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1)

전담의소대 보유 시설·장비 기준(제16조제5항관련)

1. 소방청사 : 소방장비를 보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기능을 갖춘 규모의 건축물

2. 필수보유 소방장비

| 구분 | 종류 | 보유기준 |
|------|-------------------------------------|------------|
| 기동장비 |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 1대 이상 |
| 진압장비 |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 2대 이상 |
| | 소방호스(40mm / 65mm) | (10/5)본 이상 |
| | 관창, 결합금속구 등 | 3개 이상 |
| 구조장비 | 사다리 | 1개 이상 |
| 보호장비 |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등 | 5착 이상 |

※ 위의 소방(진압·보호)장비는 차량 적재기준이며, “소방장비관리규칙(별표1)의 소방장비를 추가배치 할 수 있다.

(별표 2의2)

연간교육의 훈련과목 및 시간(제21조제1항관련)

| 분 야 | 과 목 및 내 용 | 시 간 | 비 고 |
|------|---|------|----------------------------------|
| 계 | | 48시간 | |
| 소양교육 | 1. 국가관 2. 경제교육 및 일반상식 3. 봉사정신의 함양 4. 기타 필요한 사항 | 12시간 | 소방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과목을 선정 운영한다 |
| 실기교육 | 1. 소방상식 - 화재이론 및 예방 - 소화요령 - 교통통제 및 긴급복구 - 방화관리제도 2. 소방시설 및 검사 - 소방시설의 종류 - 조작 및 점검요령 - 소방검사의 종류 및 검사요령 3.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요령 - 대주민 소방홍보 및 소방시책의 전달 4. 화재진압의 기본요령 - 출동과 소방용수의 점용 - 방수 및 화점진입 - 잔화정리 및 산화진압요령 5. 소방활동의 안전관리 6.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34시간 | 민방위의 날 훈련을 포함한다 |
| | 비상소집훈련 | 2시간 | 각대별 실시한다 |

(별표 3)

신 체 장애 등급 표(제27조제2항관련)

| 등 급 | 신 체 장애 |
|-----|---|
| 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2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팔을 팔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3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등 급 | 신 체 장 애 |
|-----|--|
| 3 | 7. 한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10.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1.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4 | 1. 한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사람 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3.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4.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 5 | 1.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

| 등 급 | 신 체 장 애 |
|-----|--|
| 5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2.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6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 2.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5. 한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9.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

| 등 급 | 신 체 장 애 |
|-----|--|
| 6 |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7.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자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1. 기타 제1급 내지 제6급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로서 14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
| 7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

| 등 급 | 신 체 장 애 |
|-----|--|
| 8 |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 넷째 · 다섯째 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

-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은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신체등급별장애보상(제27조제2항관련)

| 등 급 | 보 상 금 |
|-----|--------------------|
| 1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100/100 |
| 2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88/100 |
| 3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76/100 |
| 4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64/100 |
| 5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52/100 |
| 6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40/100 |
| 7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20/100 |
| 8 급 |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10/100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2조(설치) ① ~ ④ (생략) <신설></p> <p>제3조(명칭) ① ~ ④ (생략)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정원</p> <p>제5조(조직) ①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②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2조(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소대 중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의 의소대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의소대를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3조(명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담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정원</p> <p>제5조(조직) ①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에는 대장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②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정원) ① (생략) ② 면지역의 경우 의소대(여성대 포함)의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여성대가 없는 면의 경우에는 대원 정원의 3분의 1까지는 여성대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u><신설></u></p> <p>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소대장, 여성대장, 전문의소대장, 지역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부대장(“의소부대장, 여성부대장, 전문의소부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8조(업무분장)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의 편제와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6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면지역의 경우 의소대(여성대, 전담의소대 포함)의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여성대가 없는 면의 경우에는 대원 정원의 3분의 1까지는 여성대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대의 정원 등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소대장, 여성대장, 전문의소대장, 전담의소대장, 지역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대장의 임기 중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선출시 부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 부대장(“의소부대장, 여성부대장, 전문의소부대장, 전담의소부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8조(업무분장)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 및 지역대의 편제와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대원의 임용) ① (생략) ② 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이하 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지역대원을 포함한다)은 소속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생략)</p> <p>제10조(임용기준) ① 대원(의소대원, 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지역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 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p> | <p>제9조(대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이하 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전담의소대원, 지역대원을 포함한다)은 소속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임용기준) ① 대원(의소대원, 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 전담의소대원, 지역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 3호와 제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 제3장 임면 | 제3장 임면 |
| <p>제14조(해임사유) (생략) 1. <u>대원이 소재불명 된 경우</u> 2. <u>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u>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14조(해임사유) (현행과 같음) 1. <u>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 된 경우</u> 2. <u>대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여 상주하지 않는 경우.</u>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현행 | 개정안 |
|---|--|
| <p>3 ~ 4 (생략) 5. <u>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과 출동(동원)에 불참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기시간이 연 시간 미만인 경우</u></p> | <p>3 ~ 4 (현행과 같음) 5. <u>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과 출동(동원)에 불참한 경우</u></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p> |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p> |
| <p>제16조(복무의무) ① <u>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p> | <p>제16조(복무의무) ① <u>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화재예방 순찰 및 홍보 활동, 특별경계근무, 출동대기근무, 교육 훈련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0 제1항 중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이하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라 한다) 등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p> |
| <p>② <u>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연16시간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u></p> | <p>② <u>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하여야 한다.</u></p> |
|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경우에는 복무와 근무방법 등을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 <p>③ <u>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 운영하여야 하며, 복무와 근무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④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고 옥내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p> |
| <p><신설></p> | <p>⑤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2의1과 같다.</p> |
| <p><신설></p> | <p>제16조의2(운영지도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을 소속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의소대원으로 임용(이하 "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 복무,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p> |
| <p><신설></p> <p>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략)</p> | <p>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
| <p>제19조(복무감독)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p> | <p>제19조(복무감독) 대원의 복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감독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나 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장이나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용소방대에게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p> <p>제23조(출동수당) ① ~ ② (생략)</p> <p>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p> <p><신설></p> | <p>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나 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장이나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소방서장이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과목, 내용, 시간은 별표 2의2와 같다. 단, 제2조제5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소방서장은 제5조제2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는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p> <p>제23조(출동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출동대기근무 수당은 1회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 1회분을 지급하고, 출동(동원)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다.</p> <p>④ 제1항의 교육훈련은 1회 4시간 이상 교육훈련에 출석한 대원에게는 출동수당 1회분을 지급하고, 교육훈련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 ~ ③ (생략) <신설></p> <p><신설></p> <p>제6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p> <p>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 ③ (생략) ⑤ 도 및 시·군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에 따른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 <p>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의소대 관련 회의, 기술경연대회, 소방체육행사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이나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와 포상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활동성과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의소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p> <p>제6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p> <p>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 및 시·군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에 따른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소방기본법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소방방재청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조례 표준준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소대는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 읍, 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제2조 제1항의 의소대를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2. 읍,면지역 :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3.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전담의소대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 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 ③ 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

제4조(대의 표지) ① 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 ②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 기,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 ③ 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 규격,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① 의소대는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서 의소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 ② 제2조제4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4호에 관한 응급의료종사자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 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 7.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 ③ 남성대장, 여성대장, 지역대장, 전문의소대장, 전담의소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소대(지역대는 제외한다)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 의소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지역대장은 제외한다)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대장의 임기중 시·도 연합회장 위촉시 부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히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남성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구호반을, 방호부에는 재난대응반·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조구급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구조구급부에는 구조반·구급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 전담의소대는 현장지원부, 현장기동부 및 홍보지원부를 두고 현장

지원부는 서무반·보급반을, 현장기동부는 기동반·안전관리반을, 홍보지원부는 예방지원반·교육훈련반·홍보통제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1 와 같다.

④ 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의 정원) ① 시, 읍지역의 경우 정원은 60명으로 하며, 면지역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 용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전문의소대원은 소방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전문의소대장의 추천에 의해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소대 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상주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등본제출로 같음)
 4. 제5조 제2항에 의한 소방업무관련 전문 자격증(전문의소대원에 한한다)
-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 ① 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 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구급 및 기타재난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전담의소대원은 지체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으로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단, 전담의소대원은 필요시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고 옥내진입은 원칙적 제한한다.

④ 전담의소대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소요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의2(운영지도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협의를 얻어 퇴직 소방공무원을 의소대원으로 임용(이하“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때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타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 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5와 같다.

② 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③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④ 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5-1과 같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시·도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의소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5-2와 같다.

⑧ 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검열) 관할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1회)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 교육·훈련을 연24시간이상 받아야한다. 단, 제2조 제5항의 전담의소대는 별도로 정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은 임용 후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조제5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월1회 4시간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1회 이상, 관할 소방서장은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여·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전담의소대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일 1회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활동보조비 등) 시장·군수 및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을 지급한다.

제30조(재해보상 청구) ①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표 6 내지 별표 9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및 포상)**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활동실적관리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및 기타 재난대응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의소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와 포상을 할 수 있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및 의소대의 활동성과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의소대 및 모범 의소대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시·도 연합회 구성은 시·군 지역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하며, 시·군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 ③ 시·도 연합회장은 시·군 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시·군 연합회장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시·도 및 시·군 연합회장 위촉시 제5조 제3항의 정년을 감안하여 임기를 정한다.
- ⑤ 시·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복지향상 도모
2.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시·도는 시·도 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시·군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